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43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김재원·신장식·김준형

박정현 • 김선민 • 정혜경

이해민 • 임오경 • 박은정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법원으로써 우리 사회질서의 근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승진 시 관련 과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관련 각종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매년 경찰공무원이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헌법과「계엄법」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과목, 시험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에는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항은"을 "사항 및 제4항에따른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 및 「계엄법」과 관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경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에는 헌법 및 「계엄		
	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u>③</u>		
응시자격, <u>시험방법</u> , 그 밖에	<u>시험과목, 시험방법</u>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육훈련) ① ~ ③ (생	제22조(교육훈련)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		
	으로 헌법 및 「계엄법」과 관		
	런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경위급 이		
	<u>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u>		
	연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		
	<u>여야 한다.</u>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u>⑤</u>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			

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 원의 복무에 관한 <u>사항은</u>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u>사항 및 제4항에</u> 따른 헌법 및 「계엄법」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